

물질안전보건자료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Disc Brake Quiet		
제품번호	#05016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브레이크 패드 소음 방지		
제품의 요구 규제	알려진바 없음.		
다. 공급자정보	공급자정보		
회사명	CRC Industries, Inc.		
주소	885 Louis Dr. Warminster Pa 18974 USA		
전화번호	일반 정보	215-674-4300	
	기술 지원	800-521-3168	
	고객 서비스	800-272-4620	
웹사이트	http://crcindustries.com/ei/		
긴급전화번호	24-HourEmergency (CHEMTREC)	800-424-9300(US)	
라. 수입공급자정보	수입공급자정보		
회사명	수도엔터프라이즈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36동 107호		
전화번호	032-589-3675		
팩스번호	032-589-3677		
웹사이트	www.sudokiup.co.kr		
이메일	sudo@sudokiup.co.kr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리적 위험성	자료없음.	
건강 유해성	민감성, 피부 발암성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단일 노출(경구)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반복 노출(경구)	구분 1 구분 2 구분 1 (중추신경계, 신장) 구분 2 (신장)
환경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구분 3
OSHA 규정 위험성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 문구

피부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음. 발암물질로 의심됨. 섭취를 통해 기관(중추신경계, 신장) 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섭취에 의한 장기적 혹은 반복적 노출을 통해서 장기(신장) 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예방 조치 문구

예방

사용 전에 특별 지시사항을 확보할 것. 모든 안전 예방지침을 읽고 이해하기 전까지 취급하지 말 것. 적합한 환기내에서 사용할 것. 제품 사용 및 건조시키는 동안 신선한 공기의 공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과 창문을 열거나 다른 방법을 이용할 것. 라벨에 표시된 증상을 느낀다면, 환기를 증가시키거나 그 곳에서 벗어날 것. 취급 후에는 씻을 것. 이 제품을 사용중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또는 흡연하지 말 것. 오염된 작업복은 작업장 밖에서는 착용하지 말 것. 보호 장갑/보호복/눈 보호구/안면 보호구를 착용 할 것.

대응

피부접촉시 :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낼 것. 피부자극 또는 발진이 발생하면 : 의학적 도움/조언을 받을 것. 재사용전에 오염된 작업복을 씻어낼 것.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 의학적 도움/조언을 받을 것.

- 것.
- 저장 밀봉하여 저장할 것.
- 폐기 내용물/용기를 지역/국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것.
- 다. 분류되지 않는 위험성(HONC) 알려진바 없음.
- 라. 추가적인 정보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혼합물 화학물질명	CAS 번호	(%)
물(Water)	7732-18-5	30 - 4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1 - 3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	102-71-6	1 - 3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 0.2

*특정 화학 물질 및 구성의 비율은 영업비밀로 하고 있음.

4. 응급조치 요령

- 가. 흡입시 호흡이 어려울 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안정된 자세를 취할 것. 증상이 발전되거나 지속될 시 의사에게 연락할 것.
- 나. 피부 접촉시 오염된 작업복을 즉시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씻어낼 것. 습진 또는 다른 피부질환의 경우 : 의사의 지시를 받고 지시대로 따를 것.
- 다. 눈 접촉시 물로 씻어낼 것. 증상이 발전되거나 지속되면 의학적 도움을 받을 것.
- 라. 섭취시 입을 씻어낼 것. 많은 양의 섭취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독극물 센터에 연락할 것.
- 마. 중요 증상 마취효과. 행동변화. 운동기능 감소. 피부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음. 피부염. 발진. 부종.
- 급성 및 효과지연시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음.
- 바. 즉각적인 의료처치 및 특별치료 필요시 일반적인 지원 조치를 제공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 증상이 지연될 시 관찰 및 유지.
- 사. 일반적인 조치사항 의료인에게 포함된 제품 성분을 알려주고, 그들도 예방하도록 주의를 줄 것. 재사용전에 오염된 작업복은 씻을 것.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 소화제 물안개. 거품. 건조화학분말. 이산화탄소(CO2).
- 나. 부적절한 소화제 화재가 번질 수 있으니 워터젯(water jet)을 사용하지 말 것.
- 다.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화재 시, 건강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
- 라. 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주의사항 자급식 호흡장치와 전체보호복을 화재시에 착용할 것.
- 마. 일반 화재 위험성 화재나 폭발위험이 보고되지 않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필요없는 인원은 멀리 대피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 청소시 적절한 보호 장비와 의류를 착용할 것. 미스트, 증기를 흡입하지 말 것.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손상된 용기 또는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 것. 적합한 환기를 보장할 것. 누출이 심각해 통제할 수 없다면 관할 기간에 보고할 것. 개인보호구에 관한 사항은 MSDS 8항 참조.
- 나. 정화 또는 제거방법 이 제품은 물과 혼합됨. 소량 유출시: 흡착천이나 플리스(fleece)로 닦아낼 것. 잔여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철저히 깨끗하게 닦을 것. 재사용을 위해 쏟아진 유출물을 본래의 용기에 담지말 것. 적합한, 덮여진, 라벨이 표시된 용기에 물질을 넣을 것. 폐기물처리의 경우 MSDS 제 13항 참조.
- 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조치사항 배수로나 수로 또는 땅 위에 방출되는 것을 피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사용 전에 특별 안전 지시사항을 확보할 것. 모든 안전 예방지침을 읽고 이해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말 것. 미스트 또는 증기를 흡입하지 말 것. 눈, 피부 또는 옷에 접촉하지 말 것. 장기간 노출을 피할 것. 사용중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또는 흡연하지 말 것. 가능하다면 닫힌 상태로 사용할 것. 적합한 환기를 제공할 것.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 것. 취급 후에는 손을 씻을 것. 모범적인 산업 위생 관행을 준수할 것. 제품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품 라벨 참조.
-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용기를 밀폐하여 보관할 것. 동결로부터 보호할 것. 공존 할 수 없는 물질과 멀리하여 보관할 것.(본 MSDS 10항참조)

8. 노출방지/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US.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Threshold 기준값

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TWA	1 mg/m3	Inhalable fraction and vapor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CAS 107-21-1)	STEL	10 mg/m3	Aerosol, inhalable.
		50 ppm	Vapor fraction
	TWA	25 ppm	Vapor fraction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CAS 102-71-6)	TWA	5 mg/m3	

US. NIOSH(미국직업안전건강연구소) 화학물질 유해성 포켓가이드

구성성분	종류	값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TWA	15 mg/m3 3 ppm

나. 생물학적 노출기준 구성성분에 대해 알려진 생물학적 노출기준은 없음.

다. 노출 가이드라인

US-California OELs: 피부지정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피부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음.

US ACGIH Threshold 기준 수치 : 피부지정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피부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음.

라. 적절한 공학적 관리 (일반적으로 시간당 10회 환기가 되는) 양호한 전체환기를 실시할 것. 환기 속도는 작업장 여건에 맞아야 함. 적용이 가능하면 공정기밀 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기타 공학적 관리를 사용하여 공기중 수준이 권고 노출한계 이하가 되도록 유지시킬 것. 노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공기중 수준이 허용되는 수준이 되도록 유지시킬 것.

마.개인 보호조치 및 장비

눈/얼굴 보호 안전 측면 보호안경 또는 고글

피부 보호

손 보호 니트릴, 네오프렌 재질의 보호장갑 착용

기타 보호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할 것.

호흡기 보호 공학적 관리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립 산업 안전 보건 연구소(NIOSH)에서 승인한 카트리지를 사용할 것. 밀폐된 공간에서 비상식 자급식 호흡장치 사용할 것. 공기 모니터링은 실제 직원에게 적용되는 노출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함.

열위험 필요시 적절한 열 보호복 착용.

바. 일반적 위생 고려사항 항상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음식물 섭취 또는 흡연전에 항상 씻는 것과 같은 양호한 개인 위생 기준을 준수 할 것.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서 작업복이나 보호 장비를 정기적으로 세척 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물리적 상태 고체. 액체.
형태 고체. 반 고체 점상.
색상 붉은색.

나. 냄새 아크릴.
다. 냄새 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12.8°C (9°F) 추정됨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00°C (212°F) 추정됨
사. 인화점	없음
아. 증발 속도	느림.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2.6% 추정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15.3% 추정됨
카. 증기압	9.4 hPa 추정됨
타. 증기밀도	자료없음.
파. 상대밀도	1.03
하. 용해도(물)	산성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398°C (748.4°F) 추정됨
더. 분해 온도	자료없음.
러. 점도(운동)	자료없음.
버. 휘발도	39.1% 추정됨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반응성	제품은 통상의 사용, 저장 및 운송조건에서는 안정하고 비반응성임.
나. 화학적 안정성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물질은 안정함.
다. 유해 반응의 가능성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위험한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라. 피해야 할 조건	호환되지 않는 물질과의 접촉. 동결로부터 보호.
마. 피해야 할 물질	강 산화제.
바.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아크릴 모노머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흡입시	흡입에 의한 기관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흡입에 의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은 장기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피부 접촉시	피부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효과는 인간에게서 관찰되지 않았음.
눈 접촉시	눈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일시적인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섭취 시	이 물질을 삼키면 위장장애를 야기할 수 있음. 섭취에 의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 기관 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나. 증상관련

물리적,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 마취효과. 행동변화. 운동기능 감소. 피부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음. 피부염. 발진. 부종.

다. 독성 영향 정보

급성 독성 자료없음

구성성분	종	시험 결과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____ 급성		
경피		
LD50	토끼	8180 mg/kg
경구		
LD50	쥐	680 mg/kg
에틸렌 글리코(Ethylene glycol)(CAS 107-21-1)		
____ 급성		
경피		

LD50	쥐	> 5000 mg/kg
경구		
LD50	쥐	> 5000 mg/kg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CAS 107-21-1)

급성

경피		
LD50	토끼	> 2000 mg/kg
경구		
LD50	쥐	4190 mg/kg

* 제품에 대한 추정치는 추가 성분 데이터에 기초할 수 있음.

피부 부식성/자극성 장기적인 피부 접촉은 일시적인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심한 눈 손상/자극성 눈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일시적인 자극을 야기할 수 있음.

호흡기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없음.

피부 과민성 피부 알러지 반응을 야기할 수 있음.

생식세포 변이원성 제품 또는 어떤 성분으로 0.1%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유전독성이나 돌연변이 유발성에 대한 자료는 없음.

발암성 발암물질로 의심됨.

IARC 모노그래프. 발암의 전반적 평가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구분2B 인간에게 발암가능성 있음.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CAS 102-71-6) 구분3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OSHA(미국직업안전위생국) Z-1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한 제한 (29 CFR 1910.1000)

규제되지 않음.

미국. 국립 독성 프로그램 (NTP) 발암물질 보고서

등록되지 않음.

생식독성 이 제품은 생식이나 발달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섭취에 의한 기관(중추신경계, 신장)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섭취에 의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기관(신장)에 해를 야기할 수 있음.

흡인 유해성 흡인 유해성 없음.

만성 효과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기관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해로울 수 있음. 장기적인 흡입은 해로울 수 있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효과는 인간에게서 관찰되지 않았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상태독성 이 제품은 환경적인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았음. 그러나, 많은 양 또는 잦은 유출이 환경에 해롭거나 손상을 입힐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구성성분	중	시험 결과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수생		
갑각류	EC50	물벼룩 (Ceriodaphnia dubia) 61.8 - 86.04 mg/l, 48시간
어류	LC50	잉어과 물고기 (Pimephales promelas) 100 mg/l, 96시간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CAS 107-21-1)		
수생		
급성		
갑각류	EC50	물벼룩(Dalphnia magna) 41000 mg/l, 48시간
어류	LC50	무지개송어, 도날드슨송어 (Oncorhynchus mykiss) 22810 mg/l, 96시간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CAS 102-71-6)		
수생		
급성		
어류	LC50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450 - 1000 mg/l, 96시간

* 제품에 대한 추정치는 추가 성분 데이터에 기초할 수 있음.

나. 잔류성 및 농축성

다. 생물 농축성

부분계수 n-옥탄/물 (log Kow)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1.43
에틸렌 글리코(Ethylene glycol)(CAS 107-21-1)	-1.36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CAS 102-71-6)	-1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본 성분으로부터 부정적인 환경 영향 (예: 오존층 감소, 광화학적 오존 발생 가능성, 호르몬 붕괴, 지구 온난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물의 처분** 이 제품은 RCRA 유해 폐기물(See 40 CFR Part 261.20 - 261.33참조)이 되지 않음. 빈 용기는 재활용 할 수 있음. 수집 및 회수 또는 허가 받은 밀봉 용기에 폐기. 물질이 배수를 통해 하수구 또는 수로로 유입하지 말 것. 화학물 또는 사용한 용기로 인해 연못, 수로 또는 도랑을 오염시키지 말 것.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 할 것.
- 나. 유해 폐기물 코드** 규제되지 않음.
- 다. 오염된 용기** 빈 용기에 잔류물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라벨 경고문에 따라 잔류물 처리. 빈 용기는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수집 되어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DOT**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 나. IATA**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 다. IMDG**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15. 법적 규제현황

- 가. 미국 연방 정부 규정** OSHA 위험요소, 29 CFR 1910. 1200.의 규정에 따라 이 제품은 '유해 화학 물질'이다.
 - TSCA Section 12(b) Export Notification (40 CFR 707, Subpt. D)** 규제되지 않음
 - SARA 304 Emergency release notification** 규제되지 않음
 - US. OSHA Specially Regulated Substances (29 CFR 1910.1001-1052)** 등록되지 않음
 - US EPCRA (SARA Title III) Section 313 - Toxic Chemical : Listed substance** 에틸렌 글리코(Ethylene glycol)(CAS 107-21-1)
 - CERCLA Hazardous Substance List (40 CFR 302.4)**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에틸렌 글리코(Ethylene glycol)(CAS 107-21-1)
 - CERCLA Hazardous Substances : Reportable quantity**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100 LBS 에틸렌 글리코(Ethylene glycol)(CAS 107-21-1) 5000 LBS유출되거나 성분의 손실이 발생 될 시 대응센터 또는 지역 비상 계획 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함.
- Clean Air Act (CAA) Section 112 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List**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에틸렌 글리코(Ethylene glycol)(CAS 107-21-1)
- Clean Air Act (CAA) Section 112(r) Accidental Release Prevention (40 CFR 68.130)** 규제되지 않음
- Safe Drinking Water Act(SDWA)** 규제되지 않음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규제되지 않음
-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of 1986 (SARA)**

Classified hazard categories

호흡 또는 피부 민감성
발암성
특정 표적 장기 독성(단일 혹은 반복 노출)

SARA 302 Extremely hazardous substance

등록되지 않음.

SARA 311/312 Eazardous chemical

있음.

SARA 313 (TRI reporting)

화학물질	CAS번호	% by wt.
에틸렌 글리코(Ethylene glycol)	107-21-1	1 - 3

나. 미국 주 정부 규정

US. New Jersey Worker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에틸렌 글리코(Ethylene glycol)(CAS 107-21-1)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CAS 102-71-6)

US. Massachusetts RTK-Substance List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에틸렌 글리코(Ethylene glycol)(CAS 107-21-1)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CAS 102-71-6)

US. Pennsylvania Worker and Community Right-to-Know Law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에틸렌 글리코(Ethylene glycol)(CAS 107-21-1)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CAS 102-71-6)

US. Rhode Island RTK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CAS 111-42-2)
에틸렌 글리코(Ethylene glycol)(CAS 107-21-1)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CAS 102-71-6)

US. California Proposition 65



경고: 암 및 생식 유해 - www.P65Warnings.ca.gov

US - California Proposition 65 - CRT : Listed date/Carcinogenic substance

1,4-Dioxane(CAS 123-91-1)	등록: 1988년 01월 01일
acetaldehyde(CAS 75-07-0)	등록: 1988년 04월 01일
D&C ORANGE NO.17(CAS 3468-63-1)	등록: 1990년 07월 01일
diethanolamine(CAS 111-42-2)	등록: 2012년 06월 22일
ethyl acrylate(CAS 140-88-5)	등록: 1989년 07월 01일
ethylene oxide(CAS 75-21-8)	등록: 1987년 07월 01일

US - California Proposition 65 - CRT : Listed date/Developmental toxin

ethylene glycol(CAS 107-21-1)	등록: 2015년 06월 19일
ethylene oxide(CAS 75-21-8)	등록: 2009년 08월 07일

US - California Proposition 65 - CRT : Listed date/Female reproductive toxin

ethylene oxide(CAS 75-21-8)	등록: 1987년 02월 27일
-----------------------------	-------------------

US - California Proposition 65 - CRT : Listed date/Male reproductive toxin

ethylene oxide(CAS 75-21-8)	등록: 2009년 08월 07일
-----------------------------	-------------------

US. California. Candidate Chemicals List. Safer Consumer Products Regulations (Cal. Code Regs, tit. 22, 69502.3, subd. (a))

diethanolamine(CAS 111-42-2)
ethylene glycol(CAS 107-21-1)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규정

EPA

VOC content (40 CFR 51.100(s)) 4%

Consumer products(40 CFR 59, Subpt. C) 규제되지 않음.

State

Consumer products 규제되지 않음.

VOC content(CA) 0.8%
 VOC content(OTC) 0.8%

라. International Inventories

Country(s) or region	Inventory name	Inventory (yes/no)
Australia	Australian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AICS)	아니오
Canada	Domestic Substances List (DSL)	예
Canada	non-Domestic Substances List (NDSL)	아니오
China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 (IECSC)	아니오
Europe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EINECS)	아니오
Europe	European List of Notified Chemical Substances (ELINCS)	아니오
Japan	Inventory of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ENCS)	아니오
Korea	Existing Chemicals List (ECL)	아니오
New Zealand	New Zealand Inventory	아니오
Philippines	Philippine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PICCS)	아니오
Taiwan	Taiwan Chemical Substance Inventory (TCSI)	아니오
United State & Puerto Rico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Inventory	예

"예" 는, 본 제품의 모든 성분이 정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요구목록에 부합되며,
 "아니오" 는, 본 제품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 정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목록에 등록되거나 등록되지 않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작성일자	2019년 04월 02일
나. 작성자	Dustin Kern
다. 버전#	01
라. 추가정보	CRC # 562C/1002580
마. 부가설명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공된 특정 자료에 적용됩니다. 다른 물질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이 물질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CRC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CRC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출처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라벨의 모든 경고와 지시사항을 읽으십시오. 본 MSDS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관리자, 보건 안전 전문가 또는 CRC의 참조를 받으십시오.